

#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

## 규정



2020. 06.

대회집행위원회

# **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규정**

## **1. 목적**

본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로스쿨”이라 한다)의 법률이론, 변론능력 배양 등을 통해 법조 실무 교육효과 향상을 목적으로 손잡고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재판 경연 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.

## **2. 대회 명칭**

본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명칭은 “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”로 한다.

## **3. 집행위원회**

손잡고는 대회 주관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집행위원회는 손잡고에서 지정하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.

## **4. 참가자**

- 1) 대회는 로스쿨 재학생(휴학생 포함, 이하 같다)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- 2) 팀 구성원은 신청일로부터 본대회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.
- 3) 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거나 결여하였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.
- 4)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연에서 요구하는 법적, 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, 연구하고 변론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되지만, 재학 로스쿨의 교수 등으로부터 자료조사방법, 서면작성방법, 구술변론기법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.
- 5) 참가자는 대회 기간 중 경연 심사를 위한 재판부에 재학 로스쿨, 인적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**5. 대회의 구성**

대회는 서면심사, 본대회로 한다.

## **6. 대회 개최 횟수**

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 단,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주기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.

## **7. 서면심사**

- 1) 참가 팀은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준비서면, 변론요지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집행위원회는 참가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한 팀의 수와 관계없이 서면심사 절차를 거친다.
- 3) 서면심사 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 한다.
- 4) 서면심사 결과 상위 8개 팀을 본대회 진출 팀으로 한다.

## **8. 대진표 작성**

- 1) 집행위원회는 본대회 경연 팀 공고 직후 자체 없이 대진 팀 결정절차를 실시한다.
- 2) 대진 팀 결정은 집행위원회의 추첨에 의한다. 단, 팀 결정은 지위(원고, 피고)에 따라 조정가능하다.
- 3) 본대회 진출 팀의 추가 선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서면심사 결과에 따른 차점 팀 순으로 진출 팀을 추가 선정한다.
- 4) 집행위원회는 확정된 대진표를 손잡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## **9. 본대회**

- 1) 집행위원회는 대진표에 따라 본대회 경연 팀의 지위를 부여하고(원고, 피고), 경연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.
- 2) 본대회 경연 팀은 서면과 화상자료(ppt) 등을 준비하여 제출한다.
- 3) 집행위원회는 본대회의 경연에 있어서 출제된 문제의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.
- 4) 본대회 경연 팀은 변론 준비를 거친 후 서면과 화상자료(ppt) 등을 이용하여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 형식으로 변론을 실시하며,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한다.
- 5) 본대회의 변론시간은 원고, 피고 각 15분씩으로 하며,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15분 이내의 질문, 응답 시간을 갖는다. 단, 경연 진행 시간은 해당 재판부의 결의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축소, 연장할 수 있다.

## **10. 재판부**

- 1) 재판부는 두 개의 조로 나누며, 각 조별 재판부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심사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 판사, 변호사, 교수 등 6인으로 한다.

## **11. 서면 작성 방법**

- 1) 제출 서면은 ‘한글(HWP)’파일로만 작성한다.
- 2) 파일명은 “대회 연도(개최공고일 기준) - 경연단계 - 지위 - 참가번호”순으로 붙인다(예 : 2020-서-피고-6001 / 2020-본-피고-6001). 지위는 피고 또는 원고로 표시한다.
- 3) 서면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.
  - 문서 크기 : A4
  - 사방 여백 : 위쪽, 아래쪽 15mm, 오른쪽, 왼쪽 20mm
  - 머리말, 꼬리말 : 20mm
  - 우측 상단 머리말에 파일명 명기
  - 하단 중앙에 쪽 번호 명기
  - 글자모양

제목 : 글씨체 휴먼 고딕, 글씨 크기 13, 자간 0, 장평 100, 문단 위, 아래 3, 굵게  
본문 : 글씨체 휴먼 명조, 글씨 크기 12, 자간 0, 장평 100, 문단 위, 아래 3
  - 줄간격 : 200
  - 분량 : 15매 이내로 작성하되,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름.
  - 각주 : 사용 불가
- 4) 법령, 판례 및 문헌 표기는 팔호로 처리한다.
- 5) 서면에는 별도의 장으로 된 표지, 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6)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는 참가 팀의 대학,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7) 경연대회 참가자는 서면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**12. 평가**

### **1)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.**

- 가. 문제의 이해도 : 쟁점 파악 능력, 논리력 등
- 나. 서면 작성의 적정성 : 구성, 법률소양, 설득력, 명료성, 문장스타일 등
- 다. 변론의 적정성 : 화술, 동작, 전달력, 독창성 등

- 라. 법정 태도의 적정성 : 예절, 법정 자세 등
- 마.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: 이해력, 정확도, 순발력 등
- 사. 일반교양 : 용어의 선택, 문화 및 역사 소양 등
- 아. 대회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

## 2) 평가방법

- 가. 위 1) 가.부터 사.까지는 득점 방식으로, 아.는 감점 방식으로 각 평가한다.
- 나. 팀순위는 재판부 3인이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 부여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.
- 다. 평가요소 및 배점비율

| 구분              | 배점 | 취득점수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문제의 이해도         | 10 |      |
| 서면작성의 적정        | 30 |      |
| 변론의 적정          | 40 |      |
| 법정태도의 적정        | 5  |      |
|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 | 10 |      |
| 일반교양            | 5  |      |
| 절차 준수의 적정(감점)   | -  |      |
| 계               |    |      |

- 라. 평가요소 및 배점비율은 해당 재판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마. 경연 팀들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 및 이를 위한 합의는 비밀로 한다. 누구든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13. 대회 규정의 적용 및 해석

대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,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거나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